# 안전인증기준

# 어린이용 비비탄총

부속서 4

# (BB Guns for Children)

1. 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비탄총의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,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. 비비 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한다. 「총포・도검・화약류등단속법」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5의 2에 의한 "모의총포"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기관의 확인서가 없는 제품은 안전검사 적용대상인 비비탄총으로 보지 아니한다.

#### 2. 관련표준

'어린이공통 안전기준'

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

KS C IEC 60825-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-제1부: 장비 등급 분류 및 요구사항

## 3. 안전요건

### 3.1 겉모양

- 3.1.1 흠, 비틀림,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.
- 3.1.2 사출 또는 주형의 군살 등이 없어야 한다.
- 3.1.3 금속제 부분은 부식 또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한 방청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.
- 3.1.4 도장 표면은 매끄러워야하며 들뜸 또는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.
- 3.1.5 비비탄총의 총열·격발과 관계있는 기관부·탄창·개머리판(또는 손잡이) 등으로 구성된 총본체 및 총 본체 이외에 부속된 부분을 포함한 일체의 것의 재질은 플라스틱이어야 한다. 다만, 나사·고리 등 총의 성능과 관계없는 소형 부품 또는 스프링 등 구조상 불가피하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품(방아쇠, 탄창멈치, 안전장치, 견착대 연결부품, 가늠자, 가늠쇠) 부품은 금속 재질의 사용이 가능하다.

## 3.2 구 조

3.2.1 날카로운 가장자리 두께 0.5 mm 미만의 금속 가장자리와 금속판 아래 놓이는 판과의 표면 간격이 0.7 mm가 넘는 경우의 금속판 가장자리는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에 따라 시험했을 때 날 카로운 가장자리가 없어야 한다.

#### 3.2.2 탄 환

- 3.2.2.1 비비탄총 탄환의 끝 반경은 2 mm 이상이어야 한다.
- 3.2.2.2 탄환의 재질은 플라스틱이어야 하며 탄환의 크기는 직경 5.7 ㎜ 이상이어야 한다.
- 3.2.2.3 탄환의 무게는 0.2 g 이하이어야 한다.
- 3.2.3 발사에너지 탄환을 발사하는 동력원은 공기압, 스프링의 압축 또는 탄성을 이용한 것이어

야 한다. 여기에서 공기압이란 공기를 포함한 기계적 구조에 의해 스프링 등으로 압축된 공기를 말한다.

### 3.2.4 발사부의 구조

- 3.2.4.1 발사부의 구조는 실린더, 피스톤, 패킹 스프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조이어야 하며 피스톤을 압축하여 장전하고 별도의 발사장치(방아쇠)가 있어야 한다.
- **3.2.4.2** 공기압에 의하여 직경 5.7 mm 이상의 플라스틱제 탄환이 바렐 패킹에 장전되어 발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
## 3.2.5 안전장치

- 3.2.5.1 총에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잠금과 해제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.
- 3.2.5.2 안전장치를 조작하여 잠금상태에서 방아쇠에 80 N의 힘을 가하였을 때 발사되지 않아야 한다.
- 3.2.5.3 안전장치를 조작하여 잠금상태에서 규정된 "3.3.4 **낙하강도시험"**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아야 하며 방아쇠에 80 N의 힘을 가하였을 때 발사되지 않아야 한다.

### 3.3 성 능

- 3.3.1 발사 성능 격발장치, 압축장치, 장전장치는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작동하였을 때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발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3.3.2 방아쇠 격발강도 방아쇠 격발은 9 N 이상, 72 N 미만의 당김 힘으로 원활히 격발되어야 한다.
- 3.3.3 탄환의 운동에너지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운동에너지는 3.3.3의 비비탄총 운동에너지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0.08 J 이하이어야 한다.
- 3.3.4 **낙하강도** 3.3.4 **낙하강도시험**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기구부의 파손이 없어야 하며 발사가되지 않아야 한다.
- 3.3.5 기구부의 강도 정상상태로 30회 작동시켰을 때 구조 또는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.
- **3.3.6 레이저 둥급(레이저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) KS C IEC 60825-1**의 레이저 등급 분류에 의하여 1급 제품이어야 한다.
- 3.4 유해물질 안전요건 비비탄총의 유해성분 기준 함유량은 다음 표 1 에 적합하여야 한다.

班 1

유해물질		허 용 치(이하)	시험방법
유해 원소 용출	안티모니 (Sb)	60 mg/kg	5.4.1
	비소 (As)	25 mg/kg	
	바륨 (Ba)	1000 mg/kg	
	카드뮴 (Cd)	75 mg/kg	
	크로뮴 (Cr)	60 mg/kg	
	답 (Pb)	90 mg/kg	
	수은 (Hg)	60 mg/kg	
	셀레늄 (Se)	500 mg/kg	

유해물질		허 용 치	시험방법
유해원소 함유량	총 납(Pb) <sup>1)</sup>	300 mg/kg	5.4.2
	총 카드뮴(Cd)	75 mg/kg	
	DEHP	0.1 %	5.4.4
프탈레이트	DBP		
가소제 총	BBP		
함유량 <sup>2)</sup>	DINP		
L 11 0	DIDP		
	DNOP		

- (1) DEHP(Diethylhexyl Phthalate,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)
- (2) DBP(Dibutyl Phthalate, 다이부틸프탈레이트)
- (3) BBP(Butyl benzyl Phthalate, 부틸벤질프탈레이트)
- (4) DINP(Diisononyl Phthalate,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)
- (5) DIDP(Diisodecyl Phthalate, 다이이소데실프탈레이트)
- (6) DNOP(Di-n-octyl Phthalate,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)
- 비고 1.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/kg 이하. 다만, 전기·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(전기 연결용 소자 등)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  - 2.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제품의 경우 DEHP, DBP, BBP를 적용하고,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제품은 DEHP, DBP, BBP, DINP, DIDP, DNOP를 적용하며, 합성수지제, 섬유 및 가죽제에 코팅한 경우 적용함.

또한,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제품 중 DEHP, DBP, BBP, DINP, DIDP, DNOP의 총합이 0.1 %를 초과한 제품에는 "경고!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"이라는 경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
## 5. 시험방법

5.1 겉모양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.

## 5.2 구 조

- **5.2.1 날카로운 가장자리**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손이나 인체에 접촉 가능한 부위는 완구 안전 검사기준에 기술된 날카로운 가장자리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테이프의 50 % 이상이 절단되면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판정한다.
- 5.2.2 탄 환 저울, 버니어켈리퍼스, 마이크로미터 등으로 확인한다.
- 5.2.3 발사에너지 탄속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.
- 5.2.4 발사부의 구조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.
- 5.2.5 안전장치
- 5.2.5.1 탄환을 장전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잠금 상태로 하고 총구를 위로 향한 수직위치에서 스프 링 저울 등으로 방아쇠에 하중을 서서히 가하여 30분간 유지한다.
- 5.2.5.2 하중을 제거한 후에 방아쇠와 안전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.

## 5.3 성능

- **5.3.1 발사성능** 격발장치, 압축장치, 장전장치는 제조자의 설명서에 따라 작동하였을 때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발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5.3.1.1 탄환을 용량에 맞게 장착한다.
- 5.3.1.2 50개 이상의 탄환을 발사시킨다. 필요 시 재장전하여 발사시킨다.
- 5.3.1.3 탄환은 매번 발사할 때마다 사용자의 의도대로 정상적으로 발사되어야 한다.
- 5.3.2 방아쇠 격발강도
- **5.3.2.1 실내온도** (16 ~ 27) <sup>∞</sup>C에서 총에 탄환을 장전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 9 N 이상 72 N 미만에서 발사되어야 한다
- 5.3.2.2 "5.3.2.1"를 5회 반복한다.
- **5.3.3 비비탄의 운동에너지** 시험 0.005 J의 정확도로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는 측정수단으로 일 반적인 사용조건에서 운동에너지를 측정하며 시험방법 및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.
- 5.3.3.1 탄환의 무게를 측정한다.
- **5.3.3.2** 측정장치에서 최대속도로 발사하여 총구의 끝에서부터 (14 ± 1) cm 떨어진 곳과 (39 ± 1) cm 떨어진 곳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측정한다.
- 5.3.3.3 5.3.3.2의 시험을 5회한 후 5회 기록 값의 평균값을 속도값으로 취한다.
- 5.3.3.4 5.3.3.3에 의한 탄환의 속도와 탄환의 무게를 이용하여 평균 운동에너지를 산출한다. 이때 시험환경조건은 실온(16 ~ 27) ℃하에서 행하며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.

운동에너지 = 1/2 m · v2

- 여기서 m 은 발사체의 질량(kg)이며, v 는 발사체의 속도(m/s)이다.
- 5.3.4 낙하강도시험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시료의 최하단으로부터 (900 ± 10) m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25 mm 두께의 쇼아(Shore)A 경도 (55±5)를 가진 고무판에 낙하시킨 후 안전장치의 풀림, 파손 여부, 탄환의 발사 여부를 관찰한다. 이때 낙하는 전후, 좌우, 상하 6방향에 대하여 각각 1회씩 실시한다.
- 5.3.5 레이저의 등급 KS C IEC 60825-1의 레이저 제품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.
- 5.3.6 필름포장재 평균두께는 시험편의 대각선상의 10곳에서 필름두께 측정기로 측정한다.
- 5.4 유해물질안전요건
- 5.4.1유해원소용출 "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"에 따른다.
- 5.4.2 총납, 총카드뮴 "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"에 따른다.
- 5.4.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"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"에 따른다.
- 6. 포장조건 포장에 사용되는 유연성 있는 플라스틱재질로 된 입구둘레가 380 mm를 초과하는 필름 포장재는 평균 두께가 0.038 mm 이상이어야 하며 입구를 봉하는 방법이 끈으로 묶을 수 있게되어서는 안 된다. 단, 포장용기를 사용자가 개봉 시 정상적으로 찢어져 버리는 수축필름의 경우는 제외한다.

### 7. 검사방법

- 7.1 모델의 구분 비비탄총의 모델은 모양별로 구분한다.
- 7.2 시료채취 방법 KS Q 1003에 따른다.
- **7.3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조건**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은 다음 표와 같다. 다만, 합부판정시 표시 사항은 제외한다.

검사구분	시료의 크기(n)	합격판정 개수(Ac)	불합격판정 갯수(Re)
안전인증	2	0	1
정기검사	1	0	1

주) 시료의 크기(n) :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수량 또는 질량

#### 8. 표시

- 8.1 제품 낱개 표면에는 제조(수입)자명 또는 그 약호 및 15포인트 이상 크기의 제품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"만 8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음", 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8.2 단위 포장에는 소비자 눈에 가장 띄기 쉬운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한글로 표시하되, 사용연령은 15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로 주위 글씨 등과 쉽게 구별되어 보이는 방법(예: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, 음·양각 등)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8.2.1 모델명 (시행규칙의 표시사항과 동일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생략가능)
- 8.2.2 사용연령
- 8.2.3 제조연월
- 8.2.4 제조자명
- **8.2.5 수입자명**(수입품에 한함)
- 8.2.6 주소 및 전화번호(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,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)
- 8.2.7 제조국명(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,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시)
- 8.3 사용상 주의사항 단위 포장의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노란바탕에 빨간 색의 선명한 문자로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 ④의 보안경 의무착용 관련 문구는 다른 문구보다 최소 50 % 이상 더 크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① 얼굴과 머리를 향하여 쏘면 눈이나 귀에 맞을 우려가 높으므로 절대로 얼굴을 향해 쏘면 안됩니다.
- ②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 됩니다.
- ③ 비비탄이 눈에 맞으면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.
- ④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.
- ⑤ 비비탄을 더 세게 나가게 하기 위하여 구조를 바꾸거나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.
- ⑥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비비탄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※ 판매자는 판매할 때에 상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린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.
- \* 사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상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어린이에게 반드시 알리고 안전사고 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- 8.4 경 고 포장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"어린이용을 만 8세 미만 어린이에게 판매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"라는 경고문을 명확히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.

경고단어 "경고"는 경고문구에서 다른 단어들보다 최소 50 % 이상 더 커야 한다. 경고단어는 안 전주의 상징 "△" 앞에 있어야 한다. 상징은 느낌표 주위에 정삼각형으로 구성된다. 안전주의 상 징은 경고단어와 같은 수평선에 있어야 한다. 안전주의 상징의 높이는 경고단어 높이와 같거나 더 커야 한다. 경고단어 "경고"는 주황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이어야 한다. 안전주의 상징의 짙은 삼 각형은 검은색이고 느낌표 부분은 주황색이어야 한다. 경고문구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이거 나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이어야 한다.

8.5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에는 사용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6.2에 규정된 사용상 주의사항과 그 외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
제 정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- 0107호(2015. 6. 4.)